

# 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(안)

(내부의견조회)

## 고속경구조선 규칙



2025. 8.

기관규칙개발팀

## - 주요 개정 내용 -

(1) 2026.07.01.일자 시행사항 (건조계약일 기준)

● 적용상 명확화 : ENP4500-124-2025

개 정 안	개 정 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5 장 기관장치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 절 총칙</b></p> <p>101. 일반사항</p> <p>1. 적용</p> <p>(1)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에 대하여는 국제 고속선 코드에도 적합하여야 한다. <u>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고속선의 경우, 해당 선박의 기국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(2)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선급 및 강선규칙 등의 관련 규정 또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 <b>【지침 참조】</b></p> <p>2. 동등효력</p> <p>이 규칙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관장치라도 우리 선급이 이 규칙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.</p> <p>〈생략〉</p>	<p>〈2026. 7. 1 시행 (선박 건조계약일)〉</p> <p>* ENP4500-124-2025</p> <p>- 내부의견수렴시, 5장 총칙에 해당 규정을 넣는 것으로 개정심의</p>

#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(안)

(외부의견조회)

## 고속경구조선 규칙 적용지침



2025. 9.

기관규칙개발팀

## - 주요 개정 내용 -

(1) 2026.07.01.일자 시행사항 (선박 건조계약일)

- 잠수펌프 용량에 대한 규정의 현실화 (ENP4500-125-2025)
- 축 계산식 적용상 명확화 (MAM4300-348-2025)

# 개 정 안

# 개 정 사유

## 제 5 장 기관장치

### 제 2 절 보기 및 관장치

#### 202. 발지장치

##### 1. 발지펌프

(1) **규칙 202.의 4항 (1)호**의 적용에 있어서, 항해구역 제한의 선박(선급 의장부호에 “C” 또는 “S”를 부기하여 등록되는 선박)에 대하여는 **표5.2.1**을 적용한다. (2020)

표 5.2.1 발지펌프의 수 (2020)

선박의 길이	동 력 펌 프		수동펌프	비고
	주기관 구동펌프	독립동력펌프		
25 m 미만	1대	—	1대	우리 선급이 승인한 경우, 주기관 구동펌프를 생략할 수 있다. 길이 10 m 미만의 선박은 물론 1개로서 펌프를 대용할 수 있다.(※)
25 m 이상 30 m 미만	1대	1대	—	수동펌프 2대로서 주기관 구동펌프 1대를 대용할 수 있다. 독립동력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펌프의 능력, 배관 등을 고려해서 독립동력펌프를 생략할 수 있다.(※)
30 m 이상 50 m 미만	1대	1대	—	수동펌프 2대로서 주기관 구동펌프 1대를 대용할 수 있다.

- (비고)
1. ※ 표시의 경감은 여객선 이외의 선박에 한한다.
  2. 이 표에 있어서 동력펌프로서 수동펌프를 또는 독립동력펌프로서 주기관 구동펌프를 각각 대용할 수 있다.
  3. 선박의 길이가 25 m 이상 30 m 미만일 경우, 독립동력펌프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은 발지펌프의 설치가 지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주기관 구동펌프의 흡입능력이 독립동력펌프가 요구하는 능력 이상으로서 배관이 필요한 전 구획으로부터 지장없이 발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를 말한다. 주기관 구동펌프를 수동펌프로 대용할 경우에는 독립동력펌프를 생략할 수 없다.
  4. 항해구역이 연해 이하인 선박에서는 유수분리기용 발지펌프를 1대의 수동발지 펌프로 인정할 수 있다.
  5. 모든 동력펌프 및 수동펌프는 화물창, 기관실, 축로 등으로부터 발지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.
  6. 길이 25m 미만의 여객선이 아닌 선박에 대해서는 용량이 1.5m<sup>3</sup>/hr 이상이라도 발지펌프 2대 중 1대는 수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.
  7. 쌍동 여객선에는 발지펌프를 가능한 한 각 선체마다 1대씩 설치하여야 한다.

(2) **규칙 202.의 4항 (3)호**를 적용함에 있어서, 발지주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발지배출장치의 경우에는 공용구역 및 선원거주구역의 전방에 있는 구역을 제외하고 각 구역마다 적어도 1대의 고정식 잠수펌프를 비치하여야 한다. 또한, 각 구역의 발지배출을 위하여 추가로 적어도 1대의 이동식 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펌프가 전기구동인 경우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이 공급되어야 한다. 각 잠수펌프의 용량  $Q_n$ 은 다음 식에 의한 것 또는 8.0 m<sup>3</sup>/h 중 큰 것 이상이어야 한다. **다만,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하는 경구조선인 경우 선급 및 강선규칙 5편 6장 4절 404. 1 및 405. 2를 준용할 수 있다.**

$$Q_n = Q / (N - 1) \text{ tonne/h}$$

여기서,

$N$  : 잠수펌프의 수

$Q$  : **규칙 202.의 4항 (3)호**에 규정된 합계용량

<생략>

<2026. 7. 1 시행 (선박 건조계약일)>  
\* ENP4500-125-2025

- 잠수식 발지펌프 용량의 현실화

개 정 안

개 정 사유

제 5 장 기관장치

제 3 절 원동기, 동력전달장치 및 부양장치 등

301. 일반사항

〈생략〉

표 5.3.1 축재료 특성에 따른 계수  $K_5$

축재료		규격최소 항복점 (N/mm <sup>2</sup> )	규격최소 인장강도 (N/mm <sup>2</sup> )	$K_5$		
재료종류	주요 화학성분(%)			적용범위 1 <sup>(1)</sup>	적용범위 2 <sup>(1)(2)</sup>	선미관측
탄소강 또는 탄소망간강	선급 및 강선규칙 2편 1장에 따른다.	200	400	126	114	114
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(316계 열)		175	470	91	81	81
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강(431계 열)	C : 0.20 이하 Si : 0.80 Mn : 1.0 Ni : 2.0-3.0 Cr : 15.0-18.0	675	850	88	80	80
듀플렉스 스테인레스 강	(3)	470	660	63	57	57
망간청동	Cu : 52-62 Pb : 0.5 이하 Mn : 2.0 이하 Fe : 1.20 이하 Zn : 나머지	245	510	92	84	84
니켈-알루미늄 청동	Ni : 4.0-6.0 Al : 7.0-11.0 Fe : 2.0-6.0 Nn : 2.0 이하 Cu : 나머지	390	740	85	77	77
니켈-동합금	Ni : 63-68 Fe : 3.0 이하 Mn : 2.0 이하 C : 0.30 이하 Cu : 나머지	350	550	85	77	77
니켈-동합금	Ni : 63-70 Al : 2.0-4.0 Fe : 2.0 이하 Mn : 1.5 이하 C : 0.25 이하 Cu : 나머지	690	960	71	64	64

(비고)

- (1) 적용범위 1 및 2는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표 5.3.1의 적용범위 1 및 2를 적용한다.
- (2) 선수측 선미관 밀봉장치의 선수측 끝단부터 중간축 커플링까지의 범위는 중간축의 계산상 소요지름까지 경감할 수 있다.
- (3) 화학성분 및 조직적 특성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규격에 따른다.
- (4) 석출경화계 스테인리스강(STS630 계열)의 경우, 표 5.3.1에서 제시된 스테인리스강에 적용되는 특성계수 중, 가장 가혹한 조건을 적용한다.

〈2026. 7. 1 시행  
(선박 건조계약  
일)〉  
\* MAM4300-348  
-2025

- 축 계산 관련  
산식적용의 명  
확화